

「 아이부자 앱 서비스 」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예정)일 : 2026.10.30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비 고
「 아이부자 앱 서비스 」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아이부자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5. <생략> 6. “간편 비밀번호”: 회원가입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로그인, 송금, “용돈”지급, 충전 등에 사용됨 7.~8. <생략> 9. “불리기(투자)연계 서비스”: 은행이 “아이부자 앱” 회원을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주식매매 등 서비스의 목록(list)을 제공하고, “아이부자 앱”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증권회사가 구축해 놓은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플랫폼에 연계(link)되도록 하는 서비스 ②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아이부자 앱” 서비스 가입은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인만 가능하며, 1인 1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제 8 조 불리기(투자)연계 서비스 ① <생략> ② “불리기(투자)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CI, 이용자의 성명 등)를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⑤ <생략>	「 아이부자 앱 서비스 」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아이부자 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5. <좌동> 6. “간편 비밀번호”: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로그인, 송금, “용돈”지급, 충전 등에 사용됨 7.~8. <좌동> 9.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 은행이 “아이부자 앱” 회원을 위하여 하나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주식매매 등 서비스의 목록(list)을 제공하고, “아이부자 앱”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증권회사가 구축해 놓은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플랫폼에 연계(link)되도록 하는 서비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및 이용조건 ①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② 1인 1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③ 가입완료시 1개의 돈통(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개설되며, 아이부자 앱과 연계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 하나은행 돈통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개설되지 않고 기존 돈통과 연계됩니다. 제 8 조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 ① <좌동> ②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CI, 이용자의 성명 등)를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⑤ <좌동>	서비스 정의 문구 추가 용어 수정 메뉴명 변경으로 인한 수정. 관계사명 변경으로 인한 수정 문구 정비(근거 약관의 명확화) 약관명 현행화 가입대상 및 이용조건 구체화 메뉴명 변경으로 인한 수정

현행	개정	비고
제 9 조 계좌의 이용등록 및 철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계좌라도 사유 발생 시 고객의 별도 동의없이 사유 해제 시까지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1~7. <생략> 8. 가타 금융기관에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9. 이용계좌 사용일 당일자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10. 본 서비스를 탈세, 범죄 수익의 합법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단, 위에서 정한 항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변경, 그리고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목록은 이용계좌 등록 서비스 내 유의사항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③~④ <생략> 제 10 조 로그인 방법 고객이 회원가입 시 직접 등록한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은행은 입력된 “간편 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제 12 조 이용한도 ①~② <생략> ③ 만 14세 미만 회원은 카드결제 및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 1일 5만원의 한도가 기본 적용됩니다. ④~⑤ <생략> 제 14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④ <생략> ⑤ 기타 거래확인 및 거래지시의 처리기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10. 기타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④ <생략> 제 21 조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계좌의 이용등록 및 철회 ①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계좌라도 사유 발생 시 고객의 별도 동의없이 사유 해제 시까지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1~7. <좌동> <삭제> 8. 이용계좌 사용일 당일자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9. 본 서비스를 탈세, 범죄 수익의 합법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단, 위에서 정한 항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변경, 그리고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목록은 이용계좌 등록 서비스 내 유의사항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③~④ <좌동> 제 10 조 로그인 방법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직접 등록한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은행은 입력된 “간편 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제 12 조 이용한도 ①~② <좌동> ③ 만 14세 미만 회원은 카드 및 제로페이 등 결제에 대해 1일 5만원의 결제한도가 기본 적용됩니다. ④~⑤ <좌동> 제 14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④ <좌동> ⑤ 기타 거래확인 및 거래지시의 처리기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 ①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좌동> <삭제> ③~④ <좌동> 제 21 조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서비스 중단, 제한 조항 삭제. 조문 삭제로 인한 조문 번호 변경 용어 수정 만 14세 미만 회원의 결제한도 명시 추가 약관명 현행화 포괄적인 서비스 중단, 제한 조항 삭제. 약관명 현행화 준용 약관의 명확화

현행	개정	비고
제 22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과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재판관할 조항 수정 개정 시행일 추가